

제18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 
제19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 
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 
번호 929

2001년 9월 일  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 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 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
  -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 
(2001년 9월 10일 상정)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구 전설국장)

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(2000. 7. 1부터 시행)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- 주요골자
  - 조례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.
    -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 
→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
  -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.(안 제3조)
  -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함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때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함으로써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공동구 설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.(안 제4조)
  -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에 관하여 정함.(안 제6조)

-점용료

- 공동구에 수용되는 점용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함.  
(다만,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남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8%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남부 할 수 있도록 함.)

-사용료

-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: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되며, 최초년도분은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로 하며,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년도 3월 말로 함.
-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: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함.
-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현행 조례의 공동구설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삭제함.
  - 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
  -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  -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- 3.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 
(전문위원 박용훈)
-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.
- 도시계획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시행(2000. 7. 1)과 관련하여
- 현행 조례상의 일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공동구에 대한 점용료, 사용료, 관리비 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여 전제적인 조례 구성체계를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.
- 본 조례의 명칭을 "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"로 변경하고 안 제1조(목적)의 내용 중 공동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, 설치비용부담 및 공동구에의 수용 등에 관한 현행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하거나 관련 조례안에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영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, 법 제37조 및 영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공동구 점용료 등의 부과

및 정수에 관한 필요 사항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안 제3조(점용허가 등) 및 제4조(점용료 및 사용료)에서 시장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점용 및 사용에 정면적을 정할 때에는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련 비용부담 등 공동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그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'서

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' 제18조에 의한 '공동구관리협의회'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공동구 관리 업무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또한, 안 제4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점용료 산정을 위한 공동구 설치비용 산출시 공제토록 한 것은 영 제3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.

#### 《 공동구 설치 현황 》

구 분	개	여 의 도	목 동	가 략	개 포	상 계
시설년도	-	'78. 2	'87. 12	'87. 12	'87. 12	'89. 7
위 치	5개소	영등포구 여의도동	양천구 목동	송파구 가락동 서초구 양재동 강남구 개포동	노원구 상계동	
연 장	31.1km	6.1km	11.7km	7.4km	4.8km	1.1km
작 업 구	115	44	16	30	21	4
환 기 구	149	50	27	45	22	5
수용시설	-	전기, 통신, 상수도, 난방	전기, 통신, 상수도, 난방	전기, 통신, 상수도	전기, 통신, 상수도	전기, 상수도

○ 안 제6조(부과·징수)에서 공동구 점용 예 정자의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공동구 시설 수용 촉진 등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점용료 분할 납부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 8%의 이자를 붙여 허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(대부료의 납기) 및 제105조의 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)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원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안 제7조(이의신청)에서는 공동구 점용료 및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, 기타 조례안에서는 체계적 조문정리와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조례 구성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□ 종합의견입니다.

○ 도시계획법 등 관련 상위법령상의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보완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공동구 설치에 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구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정수에 관한 필요사항만을 대상으로 조례 구성을 체계화하는 것을 재정비하고

○ 공동구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경우와 점용 및 사용예정 면적을 정할 때에는 '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'개정을 통해 그 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 '공동구관리협의회'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며, 점용료 분할납부 허용사유와 기간 및 수납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등 공동구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930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<td>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1년 9월 일 건설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 회 제4차 건설위원회 (2001년 9월 10일 상정)</p> <p>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구 건설국장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 주요 시설물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,</li> <li>○ 시설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, 또한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.(안 제11조)</li> <li>-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-교동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-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</li> <li>○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·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, 운영 및 구성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8조)</li> </ul>	의안	930	번호		<p>- 공동구관리협의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.</p> <p>- 공동구관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.</p> <p>○ 하천복개구조물의 관리자를 복개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주용도에 따라 세분화 함. (안 제35조)</p> <p>-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(주차장, 적 환장 포함)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자치구 청장</p> <p>-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, 민간건축물은 자치구청장</p> <p>- 주용도가 상기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</p> <p>○ 하천 및 하천시설물,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장 및 제7장)</p> <p>-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(안 제41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기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</li> <li>• 정밀점검 : 2년에 1회 이상</li> <li>• 긴급점검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</li> <li>•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</li> <li>• 태풍·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</li> <li>• 위 가로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</li> <li>•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li> </ul> <p>-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(안 제4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시점검 :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</li> <li>• 정기점검 :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</li> <li>• 정밀점검 : 2년에 1회 이상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)</li> <li>• 특별점검 : 강우 전·후 등 특별점검 필요시</li> </ul> <p>3.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</p>
의안	930				
번호					